

2024년 인천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결정사항 및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인천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결정사항 및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4년 1월 10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I. 결정사항

- 위원장 선출 : 김미영 위원장
- 회의 공개 여부 : 공개
- 의정활동비 기준금액 결정 : 월 1,500,000원 / 연 18,000,000 [상한액]
 - 의정자료수집·연구비 : 월 1,200,000원
 - 보조활동비 : 월 300,000원
- 주민의견수렴 방법 결정 : 공청회

II.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24. 1. 5.[금] 10:00 ~ 11:00
- 회의장소 : 제1청 서별관 2층 회의실
- 참석인원 : 9명
- 회 의 록 : 붙임 참고

- 인천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 위원회 - 회 의 록

회 의 명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일 시	2024. 1. 5.(금) 10:00 ~ 11:00		
장 소	제1청 서별관 2층 회의실		
참석현황	참석대상	참석인원	불참인원
	10명	9명	1명
안건명	1.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 회의 공개 여부의 건 3. 의정활동비 결정의 건 4.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법 결정의 건		

(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팀장 박여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진동으로 전환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3년간의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개최에 앞서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통리장연합회 인천중구지부 김미영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중구지회 황규한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인천지방법무사회 박홍열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인천중구새마을회 류한상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인천중구주민자치연합회 김관섭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태균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인천공항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김미숙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인천하늘중학교 운영위원회 이지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인천중구 소상공인연합회 김수연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촉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위촉장은 구청장님께서 전달하시겠습니다.

우측에 계신 위원님들부터 수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호명받은 위원님께서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전달 및 구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후 퇴장)

(기획팀장)

오늘 회의는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3년간의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책상에 배부해드린 선서문으로 별도의 선서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서명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성원 보고, 위원장 선출, 의정활동비 결정, 주민의견수렴 방법 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재적 위원 10분 중 총 9명이 참석하여 성원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의 주재하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은 연장자이신 E 위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E 위원님께서서는 위원장직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E)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나이를 먹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숫자를 아예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제가 제일 나이가 많대요. 임시로 제가 위원장이 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인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드시고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추천하실 분들 계시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H 위원) 지금 지금 임시로 앉으셨지만 위원님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임시위원장 E)

아닙니다. 저는 하는 일이 많아서

(H 위원)

추천 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임시위원장 E)

다른 조금 젊은분이 이렇게 좀

(H 위원)

회의 때 만나오실 거예요?

(임시위원장 E)

나오죠. 이왕이면 조금 젊은 분이 이렇게 좀

(I 위원)

이번이 처음이자 끝이에요

(임시위원장 E)

한 번 아니야 여기 또 있어요. 또 있어요. 한 번 더 있을 것 같은데

(기획팀장)

저희가 의정활동비의 경우에는 오늘 인상을 만약에 결정하게 되면 추후에 이제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의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I 위원)

인상 여부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시위원장 E)

그러니까 인상을 하나 마냐 오늘 이것만 결정하고 이제 다음에 또 공청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정을 짓는다는 얘기죠?

(기획팀장)

네

(임시위원장 E)

또 좀 추천 좀 해주세요.

(I 위원)

이제 그냥 가시죠.

(임시위원장 E)

제가 이거 회의 진행할 능력이 없어갖고 이왕이면은 다른분들 안계세요?

(D 위원)

그냥 하도록 하시죠. 매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임시위원장 E)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단수 추천이 되어서 의정비 심의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일동)

네 (박수)

(임시위원장 E)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다음에 위원장으로 선출된 제가 뜻하지 않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보다도 능력 있는 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회의 진행을 잘할지 걱정이 좀 앞서요. 회의 진행 중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의정비심의위원회 주요 심의 내용이 24년부터 26년까지 구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지역 주민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그에 따른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모쪼록 회의 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안건인 회의 공개 여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7항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대요.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회의를 3분의 2 동의 하에 이거를 공개할 수도 있고 공개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견들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한.

(I 위원)

공개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E)

그렇죠

(기획팀장)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이 공개 여부는 회의록 공개는 법상 해야되는 거고요. 이 회의에 기자라든지 다른 분들이 참관하실 때 참관하게 허용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E)

그러면 허용하는 걸로?

(위원 일동)

네

(위원장 E)

그러면 허용하는 걸로 하고요.

비공개 의무, 이제 이거는 다음은 이제 의결이 됐고 의원님 의결에 따라 심의회는 공개하는 걸로 이의 없으신 걸로 하고요.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자료에 대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재성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회의 자료에 대해서 주요 내용 위주로 이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자료 3쪽을 보시겠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에서 결정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할 의정활동비 금액입니다.

다음 4쪽 의정활동비 산정 기준 부분입니다. 의정활동비란 의정자료 수집, 연구, 이를 보조 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구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상한액은 기존 월 9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보조활동비 상한선 또한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되어 의정활동비 상한액은 전체적으로 40만원이 상향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구 의정 활동비는 개정 전에 상한액인 월 110만원, 연 1,3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결정 시 고려 사항입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은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통해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비 결정 시 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 규모입니다. 2018년 대비 2023년 예산 규모는 62.2%가 증가한 5,051억 7,300만원이며, 자체 수입은 52.4% 증가한 1,993억 7천만원입니다. 두 번째 재정 자립도입니다. 우리구 재정 자립도는 2022년 기준 37.7%이며, 이는 인천 시·군·구 중 가장 높습니다. 전국 226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중 11번째로 높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음은 결정 시 금지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비 결정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의견 수렴 부분입니다.

심의에는 의정활동비 결정 시 주민공청회 또는 여론조사 실시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쪽과 7쪽은 주민 의견 수렴의 종류와 절차에 대하여 정리한 부분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는 본 회의의 참고 자료입니다. 마지막 자료는 별첨 자료이며 행안부에서 작성한 의정 활동 및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심의 과정 중 질문하여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E)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안건인 의정활동비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께서는 심의 자료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5 상 의정 자료 수집 연구비와 보조활동비
상한액의 합계인 월 150만원 연 1,800만원으로 결정할 것인지 2안 상한액
보다 감액할 것인지 감액할 경우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를
각각 제시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G 위원)

예, 저희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코로나 때문에 의정활동
별로 못 하셔가지고 적정선으로 해서 50% 정도 가야되고 내년 되면 좀 더
잘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작년에도 해서 보니까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 아까 재정 자립도 물어보고 전국적으로 얼마나 괜찮고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돈도 벌써 인상이 돼 있다고 하길래 그럼 최대한 지금
생각해가지고 의정활동비를 이렇게 제공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 동안 물가 상승률 56.2%라는 자체를 가지고 한 번도 안
올랐다는 거는 저도 이 정도는 1년에 150에 120에 30에서 1,8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안전을 말해봤습니다.

(위원장 E)

G 의원님은 찬성?

(G 의원)

네, 이쪽으로 가는게 좋을거 같아서.

(B 위원, F 위원, I 위원)

네 찬성합니다.

(위원장 E)

그러면 전부 의원님들 전부 다 찬성인 걸로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위원 일동)

네

(위원장 E)

그러면 이 의견은 종결되었다고 선포해도 될까요?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에 따라 상한액은 월 150만원, 연 180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일동)

네

(위원장 E)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 다음에 넷째 안건인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방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 의견 수렴 방법으로 1안 공청회와 2안 여론조사 중 하나의 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회의자료 5쪽에서 7쪽까지의 고려 요소를 충분히 검토
하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H 위원)

예, 저 같은 경우는 공청회는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 할 것 같고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많이 역부족일 것 같아서 공정하게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E)

H 의원님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 의견?

(F 위원)

저도 여론조사가 맞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드는 게 공청회를 오면 여러분들이 오게 되면 얘기하는 분들만 얘기하게 되고 나머지 분들이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뒤에서 웅성웅성 있다가 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I 위원, G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E)

제 의견도 공청회는 참 시끄러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세요?

(I 위원) 비용 문제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론조사 기관에 저희가 맡기게 돼 있는데 여론조사 기관에 맡기게 되면 이제 여론조사 비용을 저희가 한 700 정도 들어가 되고 시간적으로 좀 많이 걸립니다.

(위원장 E)

시일이 많이 걸려서.

(기획예산실장)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를 하겠지만 물론 여론조사로 결정이 난다면 저희가 여론조사를 추진을 하겠지만 시기적으로 저희가 실제로 지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다른데도 보면 여론조사를 미리 준비한 데는 예산을 반영한 데가 몇군데 있고 대부분은 공청회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E)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네. 지금

(B 위원)

공청회를 하게 되면 보통 몇 명 정도라고 보입니까?

(기획팀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공청회를 하게 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공청회 공고를 내고 최소 14일 이상 공고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관심 있는 주민분들께서 이제 참석하게 되시고 거기에서 이제 의견만 주시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 안 하시는 분들도 서면으로 이제 의견을 남길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공청회 같은 경우는 보통 찬성 의견을 발표하시는 분, 그 다음에 반대 의견 발표하시는 분 그 패널들을 두고 그다음에 방청석에서도 발표할 수 있게 해드리고 최종적으로는 주민 의견서를 따로 모을 거고요. 그리고 공고기간에도 주민들이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의견서를 공고문과 같이 게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E)

그것도 그러면 그 시일이 걸리겠네요.

(기획팀장)

저희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이 단서 조항을 달았던 게 3개월 이내에 이 부분이 개정이 되면 이제 1월부터 2024년도부터 급여에 소급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결정이 돼 있는데 여론조사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3개월이 이제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살짝 저희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E)

근데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4월달이잖아요. 그 안에 이거 공청회를 할 수가 있나요? 지금 1월달부터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팀장)

저희가 최대한 이제 2월에는 여론조사든 공청회든 좀 해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E)

만약에 이게 지금 4월달까지 공청회를 못하게 되면은 선거법 때문에.

(기획팀장)

그렇게 되면 여론조사든 공청회든 실시를 못하게 돼서 결정이 늦어지면 이제 위원님들은 1월부터 소급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결정한 금액이 통보돼서 조례가 개정된 시점부터 지급이 됩니다.

(위원장 E)

지급되는 거는 그렇다 쳐도 이게 그만큼 늦어지잖아요.

(기획팀장)

그리고 법령상에 3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E)

하도록 되어있죠.

(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지금 공청회 일정을 한 2월 초순 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H 위원)

그러면 여기 청에서는 공청회 쪽으로 지금 밀고 나가시는 분위기 같은데 그게 편한가요?

(기획예산실장)

밀고나가는 게 아니라 결정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여론 조사를 하게 되면 전문 여론 기관에 맡기게 돼 있는 부분하고, 예산을 저희가 여론조사에서 필요한 예산을 또 따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 이런 절차상 기간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B 위원)

공청회는 그러면 뭐 특별한 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기획팀장)

공청회는 비용이 저희가 이제 자체 패넬들 준비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E)

이렇게 패넬에 이렇게 찬성, 반대, 찬반대 찍는거 붙이는 거 그건가요?
나가시면서 사인하고.

(기획예산실장)

패넬토론하고 아까 저희가 그 기획팀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의견을
다 수렴을 또 하게 되죠.

(H 위원)

그렇게 되면 또 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게 언제 열렸어? 나
간 적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또 반대쪽에서 탁상이냐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기획예산실장)

이렇게 공청회도 일장일단이 있고 여론조사도 지금 일장일단이 있는데,
주민들의 여론 자체도 그냥 솔직하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데 여론조사가 정확히 나올 수 있느냐 이것도 좀 고민되는 부분이고,
공청회에서 똑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거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상 둘 다 고민되는 부분
이긴 합니다.

(위원장 E)

공청회를 하게 되면은 몇 분이나 모이셔야 이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장 E)

대략 아니 최소한에서 최대치 저기 마지노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몇 명서부터 최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모여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장 E)

예를 들어서 공청회 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이거는 만약에 경우 한 관심 있는 분 한 열댓분 오실 수도 있고

(기획팀장)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관에서 그렇게 밀실로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위원장 E)

없는데 지금 저기 선거 때문에 그럴 수도. 만약의 경우 이렇게 적게 소규모로 모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되면은.

(기획예산실장)

만약에 공청회가 결정이 된다면 저희가 공청회 일정을 한 2월 초순경으로 잡기 때문에 선거 분위기와는 크게 작용을 안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E)

2월 초에 또 구정이 있단 말이죠.

(기획예산실장)

여론조사도 비슷한 부분이 생기죠. 선거 기간 중에도 저희가 여론조사 실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좀 문제이긴 한데, 저희도 둘 다 고민이긴 합니다. 솔직하게 저희 심정으로.

(위원장 E)

그럼 이거 이거 의견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결정하시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어느 쪽이든 지금 반반 50% 50%니까 의견이. 이렇게 해 갖고는 이거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냥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의견 내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

(F 의원)

자유토론은 하시고 얘기를 충분히 나눠보시고 결론을 짓죠.

(I 의원)

만약에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여론조사 기관이 전국적으로 지금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때문에 다 몰릴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아마 지금 선거에 90일이 도래됐기 때문에 보통은 지금부터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서 여론조사 기관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어떻게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도 대부분 전문 기관들에게 맡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또 지자체에도 이제 의정비심의위원회 두가지로 하게 되어있거든요, 공청회라든가 여론조사 기관에 맡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둘 다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 저희 생각은 만약 공청회 결정되면 2월 초순경에 공고 내고 공청회 일정 잡아가지고 의회까지 넘길 수 있는 기간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일정상으로. 지금 저희가 아마 예산이 이게 급하게 좀 개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을 겁니다.

(I 위원)

공청회를 통해서 한다면 기본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기획팀장)

보통 이제 저희가 회의 참석하시는 발표자분들한테 수당 정도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중문화관이나 아니면 월디관이나 이런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크게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I 위원)

다들 참고들 하시죠. 알겠습니다.

(B 위원) 공청회 공고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팀장)

공청회 공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 같은 경우는 행정 절차법상에 이제 구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제 고시공고문을 통해서 공고 하도록 되어 있고요. 널리 알리는 게 주 목표이기 때문에 14일 이상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4일 동안 공고하는 기간 동안 이제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서면으로도 받구요. 그 다음에 내가 반대 의견을 패넬로 발표하시겠다라고, 반대나 찬성 의견을 패넬로 발표하시겠다는 분들도 그때 신청 접수를 같이 받습니다. 만약에 한쪽에 찬성만 있고 반대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 이제 구에서 반대 패넬을 또 지정을 할 수가 있고, 한쪽 나오지 않는 패넬을 지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청석 의견도 방청석에 이제 마이크 넘겨드려서 의견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 안 하신 분들도 서면으로 할 수 있게 배부를 해서 수거할 예정입니다.

(H 위원)

거기 참석하신 분들만 서면으로 하나요.

(기획팀장)

공청회 공고 나갈 때 주민 의견서를 내실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지 않으신 분들도 의견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H 위원)

과연 몇 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몇 분이 굳이 그걸 지금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제가 해봐서 알잖아요. 그렇게 홍보가 높게 보이지 않는데.

(기획팀장)

제가 한 가지 첨언을 좀 드리자면 저희도 이제 의정비 심의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타 지자체에서 의정비 의회 먼저 개최한 데 회의록을 좀 먼저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제 공청회를 하시겠다는 데도 있고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곳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가장 먼저 한 경기도의 의정비심의회 자료를 봤을 때는 경기도에서는 공청회로 결정한 사유가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응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실질적인 의견 반영이 어렵다고

해서 그쪽은 이제 공청회로 결정을 하셨고 그리고 만약에 여론조사로 하신 분들 회의록도 분명히 있을 건데 아직까지 제가 그거는 끝난 회의록이 올라오지 않아서 보지 못했습니다.

(G 의원)

공청회 갔을 때 하고 지금 ARS로 할 때 했는데 ARS로 했을 때의 문제점이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우리가 잘 읽어보면 그렇고. 신뢰성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CAIT가 이렇게 했을 때는 신뢰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ARS는 좀 안 좋다고. 그다음에 그리고 기간도 지금 해가지고 한다 그래도 몇 달 동안 걸리게 되고. 오백명 천명 할때 선거랑 같이 맞물리게 되고. H 위원님 좋은 말씀 내셨는데 저도 지금 얘기 다 들어보면 저희가 3개월 안에 이걸 한다고 그러면 공청회 쪽으로 가야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저희가 와서 얘기했을 때 이게 또 맞아지면 거기서 가결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의견을 낸다고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한다면 어차피 시일이 3개월 안에 나면 또 4월에도 선거가 있다 생각했을 때 공청회 쪽으로 가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E)

다른 분들 의견 말씀하실 분들?

(B 위원)

저도 공청회 쪽에 저기를 하겠습니다.

(H 위원)

지금 상황을 봐서는 공청회가 지금 현재 상황에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얘기해 보니까?

(F 위원)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공청회냐 여론조사냐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이 거수로.

(위원장 E)

공청회와 여론조사 둘 중에서 지금 공청회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여기에 이의가 없으신가요?

(위원 일동)

네

(위원장 E)

그러면 공청회 쪽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 공무원께서는 결정 내용을 방영하여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2차 회의에서 2024년도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겠습니다.

2024년도 중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